

# 조교 운영세칙

제정 1986.12. 3    전부개정 2021.11.08  
개정 1998. 5.18    개정 2024. 1.16  
개정 2021. 6. 1    개정 2026. 3. 1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포항공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3항에 의거, 조교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: 2021.11.08)

제2조(정의) 본 세칙에서 조교라 함은 교수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. (개정: 2021.11.08)

제3조(임무) 조교는 각 학과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보조하며,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자료준비
2. 실험준비 및 실험지도 보조
3. 실험보고서의 사후관리
4. 실험·실습 및 기기의 유지관리
5. 과제물 처리
6. 도서 및 자료의 수집, 분석, 종합통계
7. 기타 연구업무 보조

제4조(자격기준)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.(개정: 2021.11.08)

제5조(정원) ① (삭제) (개정: 2021.11.08)

② (삭제) (개정: 2021.11.08)

③ 조교의 정원은 다음 학년도 해당학과의 교육 및 연구계획에 의거 산정한다.

제6조(임용원칙) 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.

② 신규임용은 서류심사, 면접에 의하며 필요 시 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.

③ (삭제)

④ (삭제: 2021.11.08)

제7조(임용절차) ① 해당학과 학과장은 학과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임용희망일로부터 3개월 전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6.03.01)

② (삭제)

③ 교원인사위원회는 각 학과의 조교활용계획서, 학과 학과장 추천서, 채용서류 등을 심사, 임용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. (개정: 2026.03.01)

제8조(임용) 총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조교로 임용한다.

제9조(구비서류) 조교의 신규임용 시 갖추어야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고용계약서 (개정: 2021.11.08)
2. 외부추천서 (개정: 2021.11.08)
3. 학력, 성적, 경력 증명서 (개정: 2021.11.08)
4. 주민등록 등본 (개정: 2021.11.08)
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(개정: 2021.11.08)

제10조(임용기간)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.

제11조(재임용) ① 해당학과 학과장은 재임용 대상자의 전학년 또는 전학기의 근무태도 및 실적에 대해 학과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.(개정: 2021.11.08.) (개정: 2026.03.01)

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재임용 한다.

③ 임용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임용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면직된 것으로 본다.

④ 조교의 재임용은 원칙적으로 2회에 한한다. 단, 학과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, 의결한다. (개정: 2026.03.01)

제12조(복무) ① 조교는 원칙적으로 전공분야에 따라 해당학과에 소속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타학과 또는 부속기관, 부설연구소 등에 겸무할 수 있다.

② 조교는 해당학과 학과장 및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: 2026.03.01)

제13조(보수) ① 조교의 보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며, 식대를 포함하여 1/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.(개정: 2024. 1.16.)

② (삭제: 2021.11.08)

제14조(포상)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조교를 포상할 수 있다.(신설: 2021.11.08)

제15조(징계위원회) 조교의 징계 처분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에 조교 징계 위원회를 둔다. 징계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.(신설: 2021.11.08)

제16조(징계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(신설: 2021.11.08)

② 위원장은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(신설: 2021.11.08)

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, 징계사유,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(신설: 2021.11.08)

④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, 관계인을 신청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(신설: 2021.11.08)

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신설: 2021.11.08)

제17조(제척사유)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(신설: 2021.11.08)

제18조(위원의 기피 등)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(신설: 2021.11.08)

② 제1항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(신설: 2021.11.08)

③ 제17조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.(신설: 2021.11.08)

제19조(징계회의록 작성) ① 징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신설: 2021.11.08)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.(신설: 2021.11.08)

제20조(징계의 사유) 조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(신설: 2021.11.08)

1. 관계법령 및 대학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조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(신설: 2021.11.08)
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조교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(신설: 2021.11.08)

제21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 ① 조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구분한다.(신설: 2021.11.08)

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.(신설: 2021.11.08)

1. 해고: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(신설: 2021.11.08)
2. 정직: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봉액의 3분의 2를 감한다

(신설: 2021.11.08)

3. 감봉: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감봉액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.(신설: 2021.11.08)

4. 견책: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(신설: 2021.11.08)

5.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.(신설: 2021.11.08)

제22조(재심청구)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·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조교 징계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.(신설: 2021.11.08)

② 징계 재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(신설: 2021.11.08)

위원장	부총장
위원	교무처장, 기획처장, 행정처장, 총장이 지명하는 1인 외부위원 1인, 변호사 1인
간사	교무팀장

③ 징계 재심위원회의 절차나 의결 및 집행방법은 징계위원회와 같다. (신설: 2021.11.08)

제23조(규정의 준용)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 (개정: 2021.11.08.)

부 칙

이 세칙은 1986년 12월 3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98년 5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이 세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세칙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1년 11월 08일부터 전부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4년 1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6년 3월 1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